

2024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호(2024.1.23.)와 관련하여 2024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진주시의회 사무국	정책지원관	행정 7급 (일반임기제)	1명	06

2. 임용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2. 26.(월) ~ 2. 28.(수) <3일간> (09:00~18:00)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에만 가능

나. 제출처 :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 (☎055-749-8956)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의회 1층

다. 제출방법 : 아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등록

3. 제출서류

- 가.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 방문(등록)시 진주시의회에서 안내에 따라 작성
- 나. 기본증명서(상세) 1통(주민등록번호 표기)
- 다.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번호 표기)
-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상세 기재)
-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병원방문전 검사서 발급가능여부 및 준비사항 확인 요망)
-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통
- 사.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확인서 1통(희망자에 한함)

4.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u>범죄경력</u>·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고용보험 임의 가입 제도 안내 및 가입 의사 확인서 >

1. 해당공무원(□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해당 사항에 체크)
 - 소속 및 직책: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 직급 및 성명: , 생년월일:
2. 내용: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 가입 가능
3.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4. 대상: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5. 가입기한: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시 가입 불가)
6. 절차: 임용 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 피보험자격 취득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8.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의사(해당란에 자필로 기재)

가입을 희망함	가입을 희망하지 않음
가입을 희망함	가입을 희망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진주시에 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의사를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소속 진주시의회 직책 임기제공무원 성명 (서명)